

의안번호	제 호
의견제시연월일	2015. . .

의견청취

**자동차정류장(선산터미널) 입체적 결정에 따른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**



구미시

자동차정류장(선산터미널)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5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기존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합리적인 이용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·복합화·입체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.
-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및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외버스터미널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.
-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,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터미널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-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공간적 범위를 추가하여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조서[변경사항없음]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④	자동차 정류장	여객자동차 터미널	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7-5번지 일원	10,261	-	10,261	경북고 제171호 (84.9.7)	

○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조서

-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 분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④-1	자동차 정류장	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7-5번지	지상 1층	-	1,957.75	1,957.75	-	터미널, 부대 및 편익시설

-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④-1	자동차정류장 (여객자동차터미널)	-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결정 - 시외버스터미널 및 부대시설 - 지상 1층, 1,957.75㎡	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의 정비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.

3. 관련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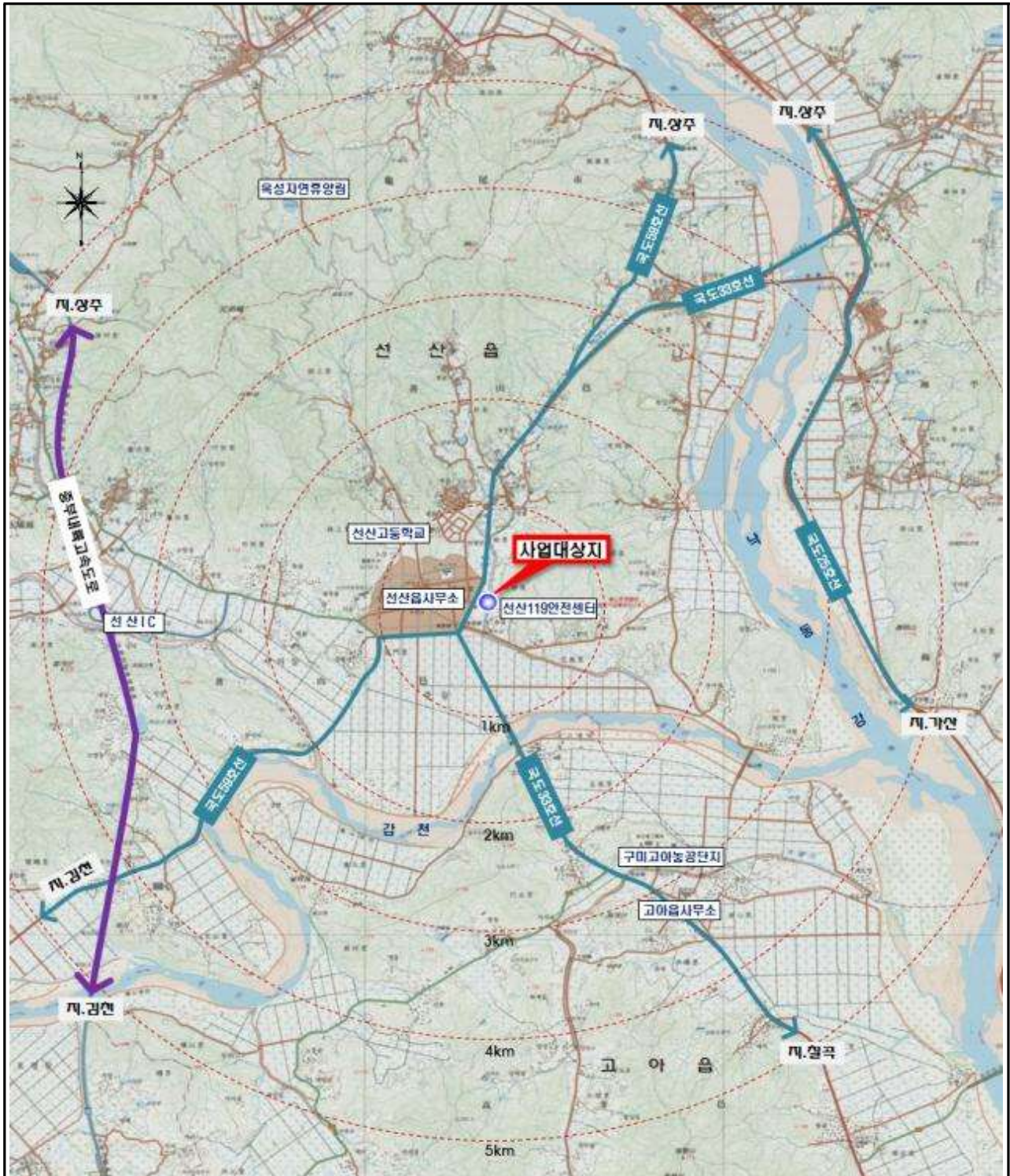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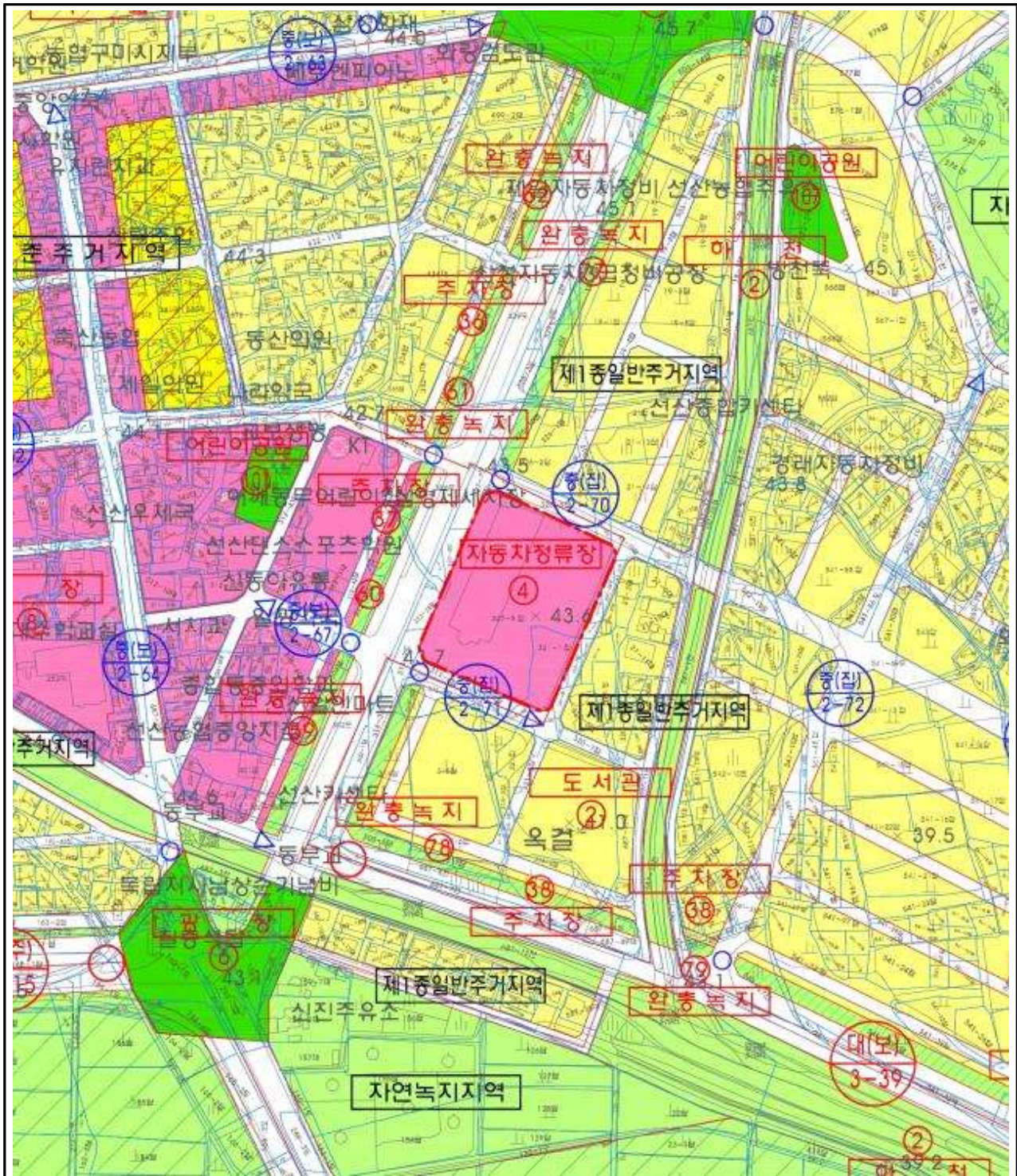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다.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시설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
4. 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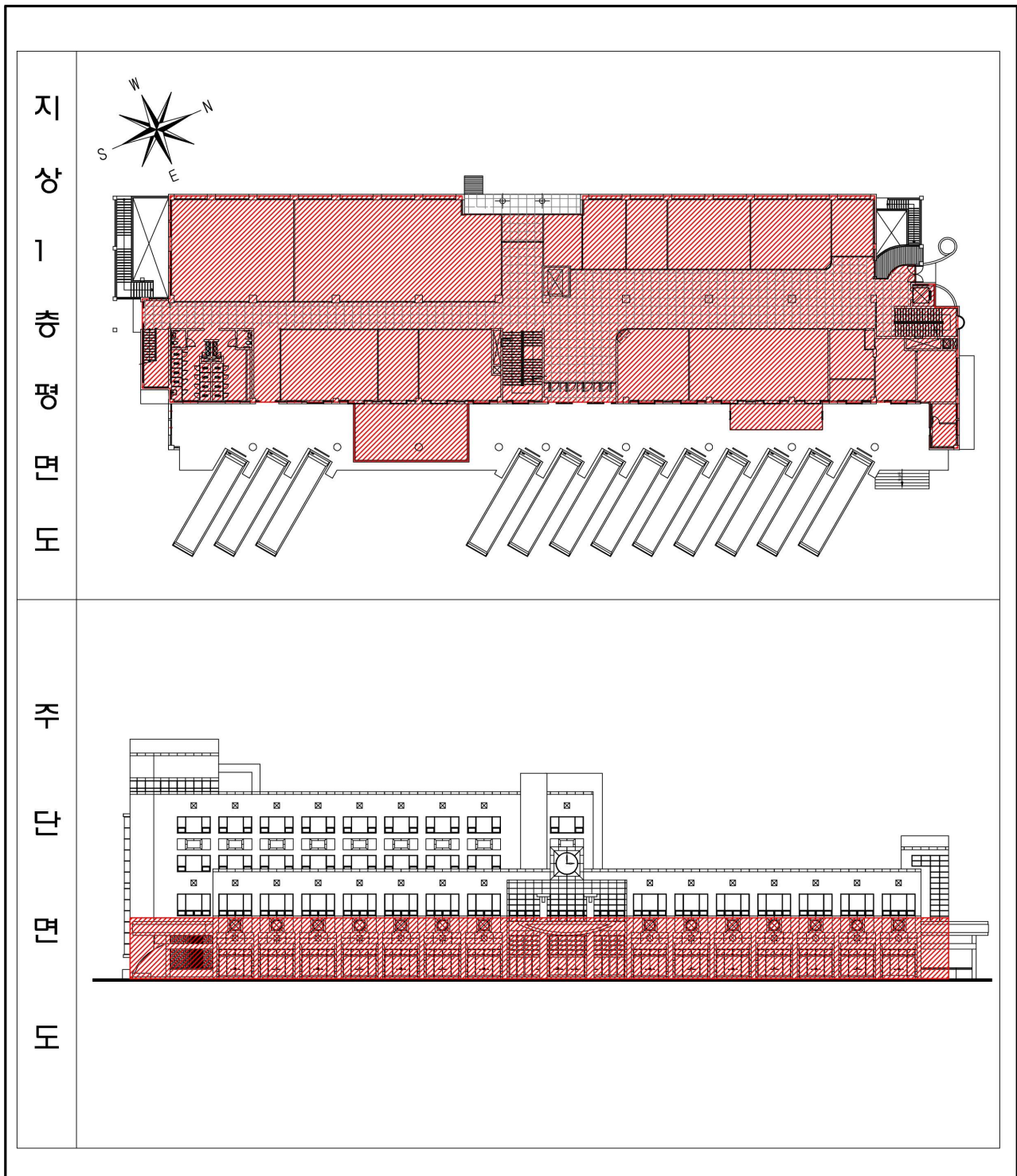
1) 위치도



2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



2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“안” :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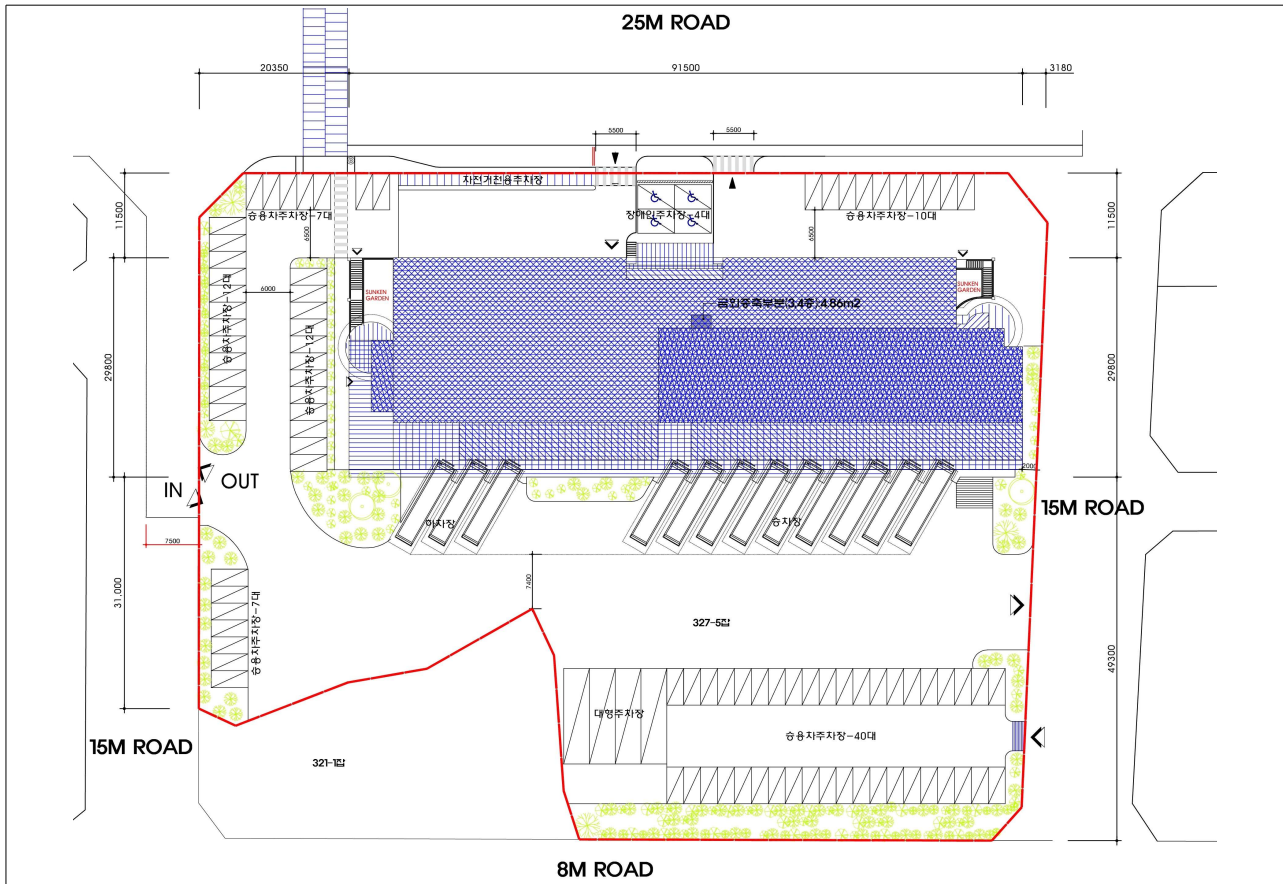
3)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0,261.00	100.00	
시 설 면 적	4,763.40	46.42	
건 축 면 적	2,512.86	24.49	
주 차 면 적	1,810.00	17.64	
녹 지 면 적	1,174.74	11.45	

토지이용계획도



4) 건축배치계획도 “안”



■ 설계개요

구 분	내 용					비 고
대 지 위 치	구미시 선산을 동부리 327-5번지					
대 지 면 적	9,153㎡					
건 축 면 적	2,512.86㎡					
연 면 적	8,011.91㎡					
건 폐 율	27.45%					
용 적 륜	59.96%					
주 차 대 수	85대(장애인주차 4대 포함)					
바 닥 면 적	층별	용 도		면 적(㎡)		비고
		당초	변경	당초	변경	
	지하 1층	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의료시설(일반병원) 2종근생(일반음식점)	2,523.64	2,523.64	증감없음
	1층	운수시설(터미널) 1종근생(소매점, 휴게음식점)	운수시설(터미널) 1종근생(소매점, 휴게음식점)	1,927.75	1,957.75	증) 30㎡
	2층	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의료시설(일반병원)	2,269.10	2,237.00	감) 32.10㎡
	3층	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의료시설(일반병원)	656.45	661.31	증) 4.86㎡
	4층	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의료시설(일반병원)	627.35	632.21	증) 4.86㎡
계				8,004.29	8,011.91	증) 7.62㎡